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

2026. 1. 2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목 차

I.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II.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7

III.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63

I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135

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 159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정 공고 2026. 1. 29

(최초공고 2025. 12. 31)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차 수정공고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최초공고 기준에 따름》

I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1. 사업개요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지붕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지붕 구조물 소유 또는 임차 사업장에 대해
 - 떨어짐 예방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철골공사 안전대 부착설비(6종), 안전방망(추락방호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굴절형), 채광창 안전덮개 등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 (공장·축사·창고)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용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용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건설현장과 공장·축사·창고 사업주*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정함

구분	지원한도
건설현장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 자부담 비율은 약 10~40%로 품목별로 상이하며 제조사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한도 내 보조금 지급(기 지급 보조금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지원횟수)

- (건설현장) 당해년도 현장별 1회 한하여 지원하되 동일 사업주당 연간 지원한도금액 초과 불가
- (공장·축사·창고) 당해년도 사업장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동일 사업주 지원 한도금액 초과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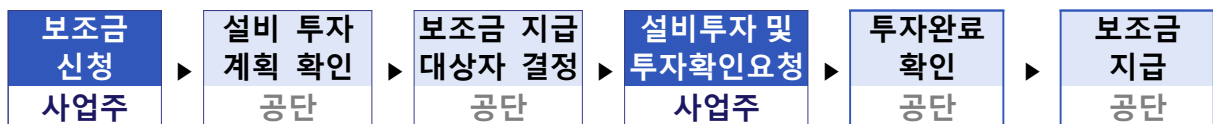
-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1]

품목	대상설비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앵커(시작, 중간, 코너, 엔드 포함), 카리비너, 중간 가이드, 와이어 등 구성품 일체
안전대 부착설비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앵커 스트랩, 빔 앵커(고정용), 빔 앵커(슬라이딩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와이어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로프형)
안전방망	추락방호망(고정용 지지로프 등 부속품 일체)
타워형 안전작업대	발판 1열, 2열 및 높이 1단, 2단, 3단 타워형 안전작업대로 구분
고소작업대	작업 최대높이 12m, 16m, 18m 굴절형 고소작업대로 구분
채광창 안전덮개	공단 지원품목 설비 인정기준에 적합한 채광창 안전덮개

- ※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첨부1] 및 지급조건[6번, 5페이지] 미충족 시 지원불가

- ※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공단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따른 설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 고용노동부공단 등 기술지원 시 떨어짐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전 신속지원 가능
 - <기본지원절차>



- <신속지원절차>



※ 노동부, 공단, 지도기관 등 기술지도 내용 중 보조금 지원 안내 및 보조금 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속지원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보조금은 공단 투자완료 확인 등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 (기타사항)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은 공단 보조금 지급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신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95억원
 -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6. 2. 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 온라인 신청 메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 자료실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투자 설계 근거자료 등 - 건설현장 및 공사용 품목은 도면상 설치위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안전대부착설비) 표준규격 적합성 확인 가능한 증명서 -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검사 필증,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장·축사·창고
④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이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건설현장
⑤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건설현장
⑥ 신청품목 관련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장 전경사진, 기술지도보고서 등)	
⑦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⑧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해당시
⑨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첨부3]
⑩ 임대인 시설투자 동의서	해당시 [첨부4]

- ※ ③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 ④ 계약서 갑지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 ⑤ 보조금 신청 직전에 KISCON으로 신고한 건설공사대장
- ※ ⑥ 기술지도 보고서는 신속지원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노동부, 공단, 기술지도기관의 보조금 신청 안내 확인 및 사업장의 보조금 신청 동의가 된 보고서를 첨부
- ※ ⑧ 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본 공고문에서 정하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 품목만 징구

- ※ ⑧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중 실거래금액 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6],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사실 확인서[첨부7]를 모두 제출
- ※ ⑩ 공장·축사·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으로, “지붕 영구형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조건>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4)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 2) ~ 4)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5) 2) ~ 4)의 제출 조건은 제출서류 8번(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일 경우로 한정함
 - 6) 1) ~ 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공무원가계산서>

- 공단이 별도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별도 공지 예정)에서 작성한 공무원가계산서에 한하며,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공단의 보완요청을 통해 제출 가능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가능하나,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 확인 요청

구 분	비고
①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1부	
③ 설비 구매·임차·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물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장·축사·창고
⑤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이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건설현장
⑥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건설현장
⑦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⑧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시
⑨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8)
⑩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공장·축사·창고 (첨부9)
⑪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시
⑫ 보조금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5)
⑬ 품목별 「소규모 특화 안전시설 지원사업(떨어짐) 투자(개선)완료 증빙사진」	
⑭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양산품)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거래명세표 포함) - (공사품)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해당시

<참고>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
- ⑧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 ⑭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중 실거래금액 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¹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6], ²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³거래사실 확인서[첨부7]를 모두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의 안전시설 구매·임차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공단의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가능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9. 기타사항

-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공장·축사·창고에 한하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 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관련법규)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30호)

첨부 1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보조금 지급 기준

■ 지원품목별 보조금액 산정 기준

품 목	보조금액 산정기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 지지로프 설치 길이(m)별 정액 지급
안전대 부착설비	- 구매·설치 수량(개수)에 따른 정액 지급
안전방망	- 구매·설치 면적(m ²) 당 정액 지급,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타워형 안전작업대	- 구매 수량(개수)에 따른 정액 지급,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고소작업대	- 규격 및 임대 기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채광창 안전덮개	- 구매 수량(개수)별 소요금액(표준단가)의 70 ~ 90% 정률 지급
※ 정액 보조금 및 공단 판단금액은 품목별 소요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품목의 설비별 인정 기준

설비명	인정 기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국내 표준규격이 없으므로,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제조사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의 적합성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함 - 추락 충격 시 앵커가 설치된 지붕재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앤드앵커(End Anchor) 및 코너앵커(Corner Anchor)에 충격흡수장치가 내장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각 앵커 간 간격(Span)의 길이는 15m 이내로 한정하며, 안전대의 해체 없이 연속적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여야 함
안전대 부착설비(6종)	-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국내 표준규격이 없으므로,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제조사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의 적합성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함 ※ 대상 설비별 제조사의 설비별 설치 및 사용 메뉴얼 준수
추락방호망	- 한국산업표준(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타워형 안전작업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S마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우수제품일 것 - 내부 승강사다리(해치형 발판 포함)를 통한 상·하 이동 및 작업대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발끝막이판, 이동형 바퀴 포함
고소작업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채광창 안전덮개	-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지침」 보조금 지급대상설비 안전보건조치기준 2-9, '지붕채광창 안전덮개' 조항을 준수한 제품일 것
기타	- 각 대상 설비별 설치·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설비명	단위	보조금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m	70,000원

■ 안전대 부착설비(6종)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설비명	단위	보조금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개	420,000원
앵커스트랩	개	57,000원
빔 앵커(고정형)	개	360,000원
빔 앵커(슬라이딩형)	개	190,000원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와이어형)	개	1,200,000원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로프형)	개	700,000원

■ 안전방망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설비명	단위	보조금	
		2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추락방호망	m ²	6,800원	5,900원

■ 타워형 안전작업대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설비명	구분		단위	보조금	
	발판	높이(단)		2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타워형 안전작업대	2열	1단	개	4,870,000원	4,261,000원
		2단	개	6,947,000원	6,079,000원
		3단	개	9,025,000원	7,897,000원
	1열	1단	개	3,786,000원	3,312,000원
		2단	개	5,200,000원	4,550,000원
		3단	개	6,600,000원	5,775,000원

※ 타워형 안전작업대는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향후 임대 단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 가능)

■ 고소작업대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

☞ 굴절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최대 작업높이 \ 임대기간	1일	1개월
12m	132,000	1,240,000
16m	176,000	1,600,000
18m	200,000	1,680,000

※ 위 금액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임차 보조금 단가임에 따라 실제 보조금 지급 시 운반비* 별도 청구 가능

※ 작업대 높이 18m 이상인 고소작업대일 경우, 18m 고소작업대의 보조금으로 산정

* 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받아 보조지원비율 80%를 적용하여 정산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

☞ 굴절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최대 작업높이 \ 임대기간	1일	1개월
12m	115,000	1,085,000
16m	154,000	1,400,000
18m	175,000	1,470,000

※ 위 금액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임차 보조금 단가임에 따라 실제 보조금 지급 시 운반비* 별도 청구 가능

※ 작업대 높이 18m 이상인 고소작업대일 경우, 18m 고소작업대의 보조금으로 산정

* 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받아 보조지원비율 70%를 적용하여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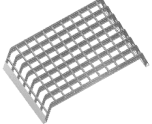
■ 채광창 안전덮개 표준단가(부가세별도)

[단위: 원]

구분	표준단가	보조금 산정기준
채광창 안전덮개	113,000	- [공사현장] 20억원 미만 소요금액의 80% 50억원 미만 소요금액의 70% -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소요금액의 90%

첨부 2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보조금 품목

설비명	사진	표준규격	제품사양(예시)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충격흡수장치 내장형)	 	ANSI, EN 등	- 앵커모듈에 충격흡수장치가 내장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1 span(앵커모듈의 간격)은 최대 15m 이하 - 연속적으로 이동 가능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ANSI, EN 등	- 하나의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에 최대 2명 사용 - 한 사람 최대 무게는 141kg 이하 - 사용 가능 플랜지 너비: 15cm~22cm
앵커 스트랩	 	ANSI, EN 등	-
빔 앵커 (고정형)	 	ANSI, EN 등	-
빔 앵커 (슬라이딩형)	 	ANSI, EN 등	-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 (와이어형)		ANSI, EN 등	텐서너, 충격흡수장치, 카라비너(2EA) 포함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 (로프형)		ANSI, EN 등	텐서너, 충격흡수장치, 앵커 스트랩(2EA) 포함
추락방호망		한국산업표준	-
타워형 안전작업대	 	안전인증 (S마크)	- 내부 사다리를 통한 상·하 이동 - 작업높이 조절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이동형 바퀴 포함
고소작업대 (굴절형)		안전인증	-
채광창 안전덮개	 	(규격기준) 길이 1.0m 이상, 폭 0.5m 이상, 높이 0.1m 미만, 무게 5kg 미만, 격자형 덮개 변길이 100mm 이하	

첨부 3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서약자

- 사업장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주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5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6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In the top navigation bar, '계산서·영수증·카드' (Invoices, Receipts, Cards)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lectronic Tax Invoice Search) section is visible. Within this section, the '자료 신청' (Apply for Data)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2'. The '자료 신청' link has a sub-menu that includes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Apply for Electronic Tax Invoice Data) and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Check Bulk Application Results for Electronic Tax Invoice Data).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Electronic Tax Invoice Data Application) form.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대표자명' (Representative Name), '종사업장번호' (Branch Number), and '상호(법인명)' (Trade Name/Corporate Name). There is a section for '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and '연내 매출 수신 여부' (Whether to receive sales within the year). The '자료구분' (Data Category) dropdown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is set to 'XML 원본' (XML Original). The 'XML 원본' option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form also includes fields for '작성일자' (Creation Date), '거래처 등록번호' (Counter Registration Number), and '세금계산서 종류' (Type of Tax Invoice).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 전체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①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역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물품·재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대입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조회 | 집계표·통계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권 전환 및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자료 신청 ②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본지침·종납납부 조회권한 관리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4. 신청자료 내려받기

신청자료 내려받기

※ 6개월 이내의 신청자료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총사업장번호

대표자명 | 상호(법인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일자 | 2025-07-10 - 2025-07-11 | 처리구분 | 전체

신청번호

조회

선택	신청일자	신청번호	세금계산서종류	매입(매출)	작성기간	처리구분	취소여부	제출건수	자료구분	상세보기
☒	2025-07-10		세금계산서	매입		처리완료	유료	1	XML, 원본	상세보기

※ 해당 자료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세 장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 총1건(1/1)

신청취소 | 자료내려받기 | 신청하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5. 자료 내려받기

자료내려받기

형식	파일명	건수	자료받기
XML	20250751000000457012542520250710202507024100...	1	내려받기

1 총1건(1/1)

닫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첨부 7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서

공급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공급받는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5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인)

첨부 8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

〈건설현장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보조금 지급요청 이전일(또는 선금급 신청일 이전일)
~ 공사종료일(ERP기준)+6개월
- ※ (예시) 보조금 지급요청 이전일: ' 25.9.30.(지급요청일: ' 25.10.1)
공사종료일(ERP기준)+6개월: ' 29.9.29(공사종료일: ' 29.3.29.)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W []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
보험기간	2025년 9월 30일 ~ 2029년 9월 29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클린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5년 9월 30일 ~ 2029년 9월 29일까지 []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월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공회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첨부 9

하자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증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세금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30%		

첨부 10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①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②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①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②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④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⑤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페이백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	○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미사용의 경우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 투자완료 다음연도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수정여부 확인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될 경우 수정 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7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1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5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3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9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5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5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42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96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1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650-685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5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43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25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5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53